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5. 7. 2 선고 2014가단10700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피고A

변론 종결2015. 6. 4.

판결 선고2015. 7. 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B에게,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, 예비적으로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,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피고의 남편 B에 대하여 구상금, 확정손해금의 합계 33,542,047원 및 그 중 구상금 25,141,7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, 독촉절차비용 상환금 27,580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.

나. 피고는 2000. 10. 14.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124,000,000원에 매수하면서 C과 사이에 계약금 10,000,000원은 같은 날, 잔금 114,000,000원은 같은 해 10. 24.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

다. 피고는 2000. 11. 28. D재건축주택조합(이하 '이 사건 주택조합'이라 한다)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. 3. 17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같은 날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9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2, 을 2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위적 주장

1) 주장 B은 1999. 3. 17.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였고, 원고는 B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, 피고는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판단 을 1, 4~8호증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·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예비적 주장

1) 주장 부부가 공동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은 B의 소유라 할 것이고, B은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,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, 피고는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판단 민법 제830조에 의하면,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,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만이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

것인데,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어서 그 특유재산으로 될 뿐 피고와 B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.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역시 원고가 제출·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.

판사박지원

별지